

## 24. 아이슬란드(Iceland)

### 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09년, 1980년
- 현행법 : 1992(장애), 1997(연금기금), 2007(사회보장), 2007(소득조사 사회부조)

### 2. 제도형태

- 기초 및 강제직역연금제도

### 3. 적용대상

- 기초연금제도 : 아이슬란드 거주자, EU가입국 및 특정 국가의 시민권자
- 강제직역연금제도 : 근로자 및 자영자

### 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기초연금 : 없음
  - 강제직역연금 : 총 소득의 최소 4%. 단체협약이 추가적 보험료를 책임짐
- 자영자
  - 기초연금
    - 추정 소득의 7.35% (추정소득은 아무 관련 없는 사용자에게 의해 유사업종에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)
  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출산급여, 산재·실업급여의 재원이 됨
  - 강제직역연금 : 총 소득의 12%
- 사용자
  - 기초연금
    - 총 임금지급액의 7.35%
  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출산급여, 산재·실업급여의 재원이 됨
  - 강제직역연금 : 근로자 임금의 최소 8%. 단체협약이 추가적 보험료를 책임짐
- 정 부
  - 기초연금 : 결손액 총당
  - 강제직역연금 : 없음 ; 사용자로서 납부

## 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# ○ 노령연금

- 기초연금제도 (소득조사)
  - 16세~67세이며 아이슬란드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67세 도달자 (특정 범주의 선원은 60세)
  - 고용은 계속 가능
  - 소득 조사 : 가입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,200,000 kronur 초과하거나(2018년 2월 1일 고용부터) 300,000 kronur (비근로자)을 초과하는 경우, 노령연금 철회대상임
  - 부분연금 : 16세 ~ 67세이며 아이슬란드 거주기간 3년 이상 40년 미만인 자는 감액연금이 지급됨
  - 조기연금 : 총 연금월액(기초연금과 강제직역연금 포함)이 239,484 kronur 이상인 65세 도달한 자에게 지급
  - 연기연금 : 72세까지 연기 가능 (1952년 이후 출생자는 80세)
  - 1인 가구 보조금 (소득 조사) : 혼자 살고 있는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배우자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급
  - 소득 조사 : 가입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,200,000 kronur 초과하거나(2018년 2월 1일 근로소득) 300,000 kronur (비근로)을 초과하는 경우, 노령연금 철회대상임
  - 연금 보조금 : 특정의 주거 및 의료비, 기타 생활비에 대해 지급
  - 아동 보조금 : 18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
  -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- 노령연금 (강제직역연금)
  -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67세 도달자(사적부문 근로자) 또는 가입기간이 32년 이상인 65세(공적부문 근로자) 도달자
  - 부분 연금 : 가입자가 완전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년에 지급됨
  - 조기 연금 : 65세 (사적부문근로자)
  - 연기 연금 : 80세까지 연기가가능(공적 및 사적부문 근로자). 1952년 이전 출생자는 72세까지.
  - 아동 보조금 : 18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

### 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 (기초연금, 소득조사)
  - 18세~66세이며 청구 전 거주 기간 40년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능력 상실의 정도가 75% 이상으로 판정받아야 함
  - 소득조사 :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2,575,220 kronur을 초과할 경우 장애연금은 철회됨

- 부분 연금 :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지만 40년 미만일 경우 감액연금 지급
- 연령연계연금보조금(소득조사) : 가입자가 처음 기초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연령에 따라 지급
  - 소득조사 : 연령연계연금보조금은 가입자의 연 소득이 2,575,220 kronur을 초과할 경우 철회됨
- 보장소득보조금 (소득조사) : 가입자가 기초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급
  - 소득조사 : 가입자의 연 과세소득이 1,315,200 kronur (근로), 328,800 kronur (연금) 또는 98,640 konur (자본)을 초과할 경우, 보장 소득보조금은 반환됨
- 1인가구보조금 (소득 조사) : 혼자 살고 있는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배우자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급
  - 소득 조사 : 가입자의 연 과세소득이 1,315,200 kronur (근로), 328,800 kronur (연금) 또는 98,640 konur (자본)을 초과할 경우, 보장 소득보조금은 반환됨
- 연금 보조금 : 특정의 주거 및 의료비, 기타 생활비에 대해 지급
- 자녀 보조금 : 18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
- 국립사회보장국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
- 장애연금은 퇴직연령 도달 시 지급 정지 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부분장애수당 : 18세 ~66세이고, 수당 청구 전 최소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하고, 근로소득상실 정도가 50~74%로 판정된 자
  - 소득조사 : 부분장애연금은 가입자의 연 소득이 2,575,220 kronur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은 반환됨
  - 자녀 보조금 : 18세 미만의 피부양자에게 지급
  - 국립사회보장국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
  - 부분장애수당은 퇴직연령 도달 시 지급 정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- 장애연금 (강제직역연금) : 소득활동능력 상실이 50% 이상으로 판정되고, 소득활동능력 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야 하고,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.

#### ○ 유족연금

- 배우자 사별수당 (기초연금) : 67세 도달 전 배우자를 사별한 배우자에게 지급
- 고아연금 (기초연금) : 사망자와 유족은 보험료 청구 전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. 수급자격유족은 18세 미만의 피부양자임
- 유족연금 (강제직역연금) : 사망자는 사망 전 36개월 동안 최소 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거나 사망당시 직역노령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함. 수급자격유족은 배우자와

동거자(동성배우자 포함)과 18세 미만의 피부양자.  
유족연금은 재혼 시 지급 정지됨.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 (기초연금, 소득조사)
  - 최대 월 239,484 kronur 지급 (연 2.873,808)
  - 소득조사 : 연금은 가입자의 연소득이 1,200,000 kronur 를 초과하는 경우, 그리고 연 비근로소득이 300,000 kronur 를 초과할 경우 45% 까지 감액됨
  - 부분연금 :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1년씩 비례해서 삭감하여 노령연금 지급
  - 조기연금 : 67세 이전에 연금이 청구한 기간의 1개월당 0.5% 삭감 지급
  - 연기연금 : 1952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는 보험계리에 따라 증가된 연금 지급. 1952년 이전 출생인 자는 67세 도달 후(최대 72세) 연금 청구한 1개월당 0.5% 증가된 노령연금이 지급됨
  - 1인가구보조금 (소득조사) : 최대 월 60,516 kronur 지급 (연 726,192 kronur)
  - 소득조사 : 연금은 가입자의 연소득이 1,200,000 kronur 를 초과하는 경우, 그리고 연 비근로소득이 300,000 kronur 를 초과할 경우 11.9%까지 감액됨
  - 연금보조금 (소득조사) : 노령연금의 5%부터 140%까지 급여 매월 지급
  - 자녀보조금 : 수급대상인 피부양자 자녀에게 33,168 kronur (연 398,016 kronur) 지급
  - 연금액 조정 : 매년 임금 변동 또는 생계비지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 조정 (둘 중 큰 쪽으로)
- 노령연금 (강제직역연금)
  -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의 1.4% 지급
  - 가입자 4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, 최저 연금액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의 56%
  - 부분연금 : 가입기간 연(年) 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
  - 조기연금 : 보험계리상 삭감된 연금액 지급
  - 연기연금 : 강제직역노령연금 산정법과 동일
  - 자녀보조금 : 연금 기금에 따라 수급대상인 피부양 자녀당 최소 월 19,202 kronur 지급 (최대 지급액은 25,603 kronur)
  - 연금액 조정 : 매년 임금 변동 또는 생계비지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 조정 (둘 중 큰 쪽으로)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 (기초연금, 소득조사)
  - 월 최대 44,866 kronur 지급 ( 연 538,392 kronur)
  - 소득조사 :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연 소득이 2,575,220 kronur 를 초과하는 경우 25% 감액 지급
  - 부분연금 : 40년 미만 거주시 기간의 1년씩 비례해서 감액됨
  - 연령연계연금보조금(소득조사) : 가입자의 기초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에 따라 월 최대 44,866 kronur 지급 (연 538,392 kronur)
    - 소득조사 :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연 소득이 2,575,220 kronur 를 초과하는 경우 25% 감액 지급
  - 보장소득보조금(소득조사) : 월 최대 143,676 kronur 지급 (연 1,724,112 kronur)
    - 소득조사 : 가입자의 연소득이 1,315,200 kronur (고용), 328,800 kronur (연금) 또는 98,640 kronur (자본)를 초과하는 경우, 감액하여 보조금 지급
  - 1인가구보조금 (소득조사) : 월 최대 48,564 kronur 지급 (연 582,768 kronur)
    - 소득조사 : 가입자의 연소득이 1,315,200 kronur (고용), 328,800 kronur (연금) 또는 98,640 kronur (자본)를 초과하는 경우, 12.96%를 감액하여 보조금 지급
  - 연금보조금 (소득조사) : 장애연금의 5%~140%까지 급여 매월 지급
  - 자녀보조금 : 수급대상인 피부양 자녀당 월 33,168 kronur지급 (연 398,016 kronur)지급. 부모 양쪽 모두 장애가 있을 경우, 보조금의 2배 지급
  - 연금액 조정 : 매년 임금 변동 또는 생계비지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 조정 (둘 중 큰 쪽으로)
  - 부분장애수당 : 16~61세인 경우 최대 월 33,168 kronur (연 398,016 kronur) 지급, 62~66세인 경우 최대 월 44,866 kronur (연 538,392 kronur) 지급
    - 소득조사 : 가입자의 연소득이 2,575,220 kronur를 초과하는 경우, 25% 감액하여 보조금 지급
  - 자녀보조금 : 수급대상 피부양 자녀당 자녀보조금 전액의 75% 지급 (자녀보조금 전액은 33,168 kronur)
  - 연금액 조정 : 매년 임금 변동 또는 생계비지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 조정 (둘 중 큰 쪽으로)

- 장애연금 (강제직역연금)
  - 소득활동능력 상실정도 및 납부, 인정된 보험기간(67세까지)의 가치에 따라 산정됨
  - 연금 수급권 취득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됨
  - 자녀보조금 : 기금에 따라 피부양 자녀당 최소 19,202 kronur 지급
  - 자녀보조금 최대금액 : 25,603 kronur
  - 연금액 조정 : 매년 임금 변동 또는 생계비지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 조정 (둘 중 큰 쪽으로)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 사별수당 (기초연금)
  - 최대 6개월까지 미망인(홀아비)에게 월 49,404 kronur 지급
  - 미망인(홀아비)가 18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, 추가 6개월 37,008 kronur 지급
  - 연금액 조정 : 매년 임금 변동 또는 생계비지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 조정 (둘 중 큰 쪽으로)
- 고아연금 (기초연금)
  - 피부양 자녀당 월 33,168 kronur 지급
  - 양쪽 부모가 없는 완전 고아에게는 두 배의 연금 지급
- 유족연금 (강제직역연금)
  - 배우자연금
    - 사망자가 75% 이상의 소득활동능력 상실로 판정받은 경우 사망자가 수급할 자격이 되는 강제직역장애연금의 50%를 지급
    - 연금은 24개월 동안 지급됨 (배우자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67세 미만인 배우자가 50%이상의 장애정도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)
  - 고아연금 : 기금에 따라 연금액 상이함
  - 연금액 조정 : 매년 임금 변동 또는 생계비지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 조정 (둘 중 큰 쪽으로)

## 7. 관리운영기관

○ 기초연금제도

- 복지부 (Ministry of Welfare)
  - <http://www.stjornarradid.is/raduneyti/velferdarraduneytid/>
  - 기초연금 제도 전반적인 감독 및 관리
- 사회보험청(Social Insurance Administration)
  - <http://www.tr.is>
  - 지사를 통한 기초연금제도 관리

- 국세청(Directorate of Customs)
  - <http://www.tollur.is/>
  - 기초연금제도 보험료 징수
  
- 강제직역연금제도
  - 재정경제부(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)
    - <http://www.stjornarradid.is/raduneyti/fjarmala-og-efnahagsraduneytid/>
    - 강제직역연금제도 전반적인 관리 감독
  - 43개의 독립적 연금기금(43 independent pension funds)
    - 제도의 운영

<2018년 ISSA 자료>